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박상구 의원 (찬성자 1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397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2. 1.

라. 회부일자 : 2019. 2. 7.

2. 제안이유

- 2016년 10월 25일에 개정된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은 제1조의 2에서 “재해약자”의 개념을 두고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”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재난약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 피주민의 특성, 사생활보호, 안전, 모성권 보장 등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대책본부의 기능 가운데 “동원명령, 대피명령, 통행제한”을 “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, 대피명령, 통행제한”으로 규정하여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함 (안 제15조)
- 다. 재난발생에 따라 대피소를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(안 제4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재난약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'대책본부')의 기능 중 응급조치 시에 재난약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, 재난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—————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</p> <p>3. ~ 9. (생략)</p>	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—————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—————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—————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.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■ 재난약자 정의 신설 및 배려 건(안 제2조 및 제15조)

- 안 제2조에 “재난약자”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은 대책본부의 기능 중 현행 제15조제2호의 기능 즉, ‘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’ 기능에 재난약자를 고려토록 하려는 것으로,
- 본 안의 발의자(박상구 의원)는 「소방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”를 포함토록 규정한 점을 들어 본 조례에도 이처럼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담자는 취지임.
- 이는 소방업무나 재난관리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소방업무와 마찬가지로 대책본부의 재난관리 기능 수행 과정에서도 재난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 사료됨.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3호1)의 용어정의에 본 개정안이 제안한 “재난약자”라는 용어 대신에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 제2조 및 제15조의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- 더불어, 현행 조례 제57조 제목에서도 “재난취약계층”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“안전취약계층”

1)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]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——— ——— ———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——— ——— ——— 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 12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
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. ~ 9. (생략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——— ——— ——— 1. (현행과 같음) 2. ——— <u>재난약자</u> 를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——— 3. ~ 9. (현행과 같음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——— ——— ——— 1. (개정안과 같음) 2. ——— <u>안전취약계층</u> ——— 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생략)	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

■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간이시설 설치 건(안 제43조)

- 안 제43조는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피소 관리와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 등을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,
- 실제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 시, 이재민 1천여 명이

실내체육관·학교 등의 대피소에 머물면서 사생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재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면서 사회쟁점으로 부각되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([사진] 참조).



<‘17년 포항 당시 흥해실내체육관>



<사생활 공간이 마련된 대피소>

[사진]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여부 비교 사진

- 참고로,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는 대피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지진옥외대피소 1,509개소, 이재민임시주거시설 965개소, 민방위 대피시설 3,203개소 등에 해당함.